

ANDANTE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33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447세대 (전용 84㎡ 447세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04(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52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팸플릿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yja33.co.kr](#)) 및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은 LH 브랜드인 'ANDANTE'를 사용하며,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개관은 2022.08.08(월) 10:00부터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yja33.co.kr](#))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1TIME(30분 단위)에 20팀(1팀 당 최대 2명 방문 가능)으로 제한하며, 예약시간 외 방문 및 미예약 방문은 불가하오니 방문이 불가한 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 참고)
 - 인천영종 A-33블록 견본세대는 84A, 84B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 일정(사전예약제)

구분	방문일	사전 예약기간	예약사이트	유의사항	주소	문의전화
견본세대 관람	08.08(월)~08.15(월) 오전10시~오후5시	08.05(금)~08.07(일) 오전10시~오후5시		시간대별, 주말방문가능 여부에 유의 ※ 점심시간(12시~13시) 방문 불가 ※ 예약시간 외 방문 및 미예약 방문 불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당첨자 서류제출	09.13(화)~09.19(월) 오전10시~오후5시		www.lhyja33.co.kr			032-566-1806
입주자 현장계약	11.16(수)~11.18(금) 오전10시~오후4시	추후 공지 예정				

* 사전예약은 예약인원 초과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견본세대 관람 및 전화상담은 08.13(토) ~ 08.15(월)에도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2년)

공고	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사전예약제)	선택품목 결정	계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전자계약	현장계약 (사전예약제)
08.04(목)	08.16(화) (10:00~17:00)	08.17(수) (10:00~17:00)	08.18(목) (10:00~17:00)	08.31(수) 14:00	09.13(화)~09.19(월) (10:00~17:00)	11.07(월)~11.09(수) (10:00~17:00)	11.14(월)~11.15(화) (10:00~16:00)	11.16(수)~11.18(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 *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시 9.17(토)~9.18(일)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주말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1) 모집공고일('22.08.0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2) 모집공고일('22.08.0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모집공고일('22.08.04)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합니다.(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됨)
- (4)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5)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분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1.14(월)~2022.11.15(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에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 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 공공분양주택 11~19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447세대 (일반공급 70세대, 특별공급 377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계)	계약 면적 (㎡) (계)	공급세대수							최고 총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특별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디자녀 기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A33	합 계								447	44	134	111	22	22	44	70	22	'24.12						
	084.9000A	84A	확장	84.90	24.6562	8.5884	41.8740	160.0186	74.3825	175	17	52	44	9	9	17	27	14	11					
	084.8300H	84AH	확장	84.83	24.6358	8.5813	41.8395	159.8866	74.3211	156	16	47	39	8	8	16	22	19	5					
	084.7200B	84B	확장	84.72	24.6039	8.5702	41.7852	159.6793	74.2247	63	6	19	15	3	3	6	11	14	4					
	084.7500H	84BH	확장	84.75	24.6126	8.5732	41.8000	159.7358	74.2510	53	5	16	13	2	2	5	10	19	2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총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총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중도금 (20%)	2차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3.08.18)	('24.04.18)		
084.9000A	84A	1층	기본형	366,130	36,613	73,226	73,226	108,065	75,000
			마이너스옵션	336,401	33,640	67,280	67,280	93,201	75,000
		2층	기본형	370,030	37,003	74,006	74,006	110,015	75,000
			마이너스옵션	340,301	34,030	68,060	68,060	95,151	75,000
		3층	기본형	377,820	37,782	75,564	75,564	113,910	75,000
			마이너스옵션	348,091	34,809	69,618	69,618	99,046	75,000
		4층	기본형	385,610	38,561	77,122	77,122	117,80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881	35,588	71,176	71,176	102,941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9,510	38,951	77,902	77,902	119,755	75,000
			마이너스옵션	359,781	35,978	71,956	71,956	104,891	75,000
084.8300H	84AH	1층	기본형	365,830	36,583	73,166	73,166	107,91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798	33,580	67,160	67,160	92,898	75,000
		2층	기본형	369,730	36,973	73,946	73,946	109,865	75,000
			마이너스옵션	339,698	33,970	67,940	67,940	94,848	75,000
		3층	기본형	377,510	37,751	75,502	75,502	113,75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478	34,748	69,496	69,496	98,738	75,000
		4층	기본형	385,290	38,529	77,058	77,058	117,64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258	35,526	71,052	71,052	102,628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9,190	38,919	77,838	77,838	119,595	75,000
			마이너스옵션	359,158	35,916	71,832	71,832	104,578	75,000

084.7200B	84B	1층	기본형	365,350	36,535	73,070	73,070	107,67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684	33,568	67,137	67,137	92,842	75,000
		2층	기본형	369,240	36,924	73,848	73,848	109,620	75,000
			마이너스옵션	339,574	33,957	67,915	67,915	94,787	75,000
		3층	기본형	377,010	37,701	75,402	75,402	113,50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344	34,734	69,469	69,469	98,672	75,000
		4층	기본형	384,790	38,479	76,958	76,958	117,395	75,000
			마이너스옵션	355,124	35,512	71,025	71,025	102,562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8,680	38,868	77,736	77,736	119,340	75,000
			마이너스옵션	359,014	35,901	71,803	71,803	104,507	75,000

084.7500H	84BH	1층	기본형	365,490	36,549	73,098	73,098	107,745	75,000
			마이너스옵션	335,486	33,549	67,097	67,097	92,743	75,000
		2층	기본형	369,370	36,937	73,874	73,874	109,685	75,000
			마이너스옵션	339,366	33,937	67,873	67,873	94,683	75,000
		3층	기본형	377,150	37,715	75,430	75,430	113,575	75,000
			마이너스옵션	347,146	34,715	69,429	69,429	98,573	75,000
		4층	기본형	384,930	38,493	76,986	76,986	117,465	75,000
			마이너스옵션	354,926	35,493	70,985	70,985	102,463	75,000
		5층~최상층	기본형	388,820	38,882	77,764	77,764	119,410	75,000
			마이너스옵션	358,816	35,882	71,763	71,763	104,408	75,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 금액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주방/식당	드레스룸
84A	기본공사비(A)	75,115	18,158	793	12,137	12,234	9,558	15,237	6,998
	확장공사비(B)	83,206	19,091	2,026	12,887	12,988	10,037	18,841	7,335
	계약자부담액(B-A)	8,090	933	1,233	750	754	479	3,605	337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877	793	1,048	638	641	407	3,064	286
84B	기본공사비(A)	72,342	18,365	793	12,276	12,374		14,783	13,749
	확장공사비(B)	80,111	19,680	2,026	13,283	13,387		17,084	14,650
	계약자부담액(B-A)	7,770	1,315	1,233	1,007	1,013		2,301	90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604	1,118	1,048	856	861		1,956	765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1백만원)	발코니 확장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시기	계약시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5.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불박이장,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선반,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냉장고장, 간접조명, 화장대 등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펌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후 공사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주택형	구분	기본형	선택항목	선택 시 납부조건			유/무상	비고	
				합계	계약금	잔금			
84A	주방	현관	미설치	①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70	147	1,323	유상	
		알파룸	② 주방팬트리	1,150	115	1,035	유상		
		미설치	③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1,460	146	1,314	유상	옵션② 선택시 선택 가능	
		가스쿡탑(가스3구)	④-1 가스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가스 1구]	750	75	675	유상	④-1, ④-2 중 택1	
			④-2 전기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650	65	585	유상		
		미설치	⑤ 냉장고장	2,240	224	2,016	유상		
		MMA(상판)+타일(벽)	⑥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대형 사각싱크볼	2,780	278	2,502	유상	옵션⑥ 선택시 주방가구 뒷선반 없음	
	침실 1·2·3	일반 상부장	⑦ 상부장 플랩장	430	43	387	유상		
		미설치	⑧ 침실1 불박이장	2,620	262	2,358	유상		
		미설치	⑨ 침실2 불박이장	1,600	160	1,440	유상		
	파우더룸 드레스룸	미설치	⑩ 침실3 불박이장	1,920	192	1,728	유상		
		공용욕실	양변기+비데	⑪ 비데 일체형 양변기	190	19	171	유상	부부욕실 기본제공
		미설치	⑫ 파우더룸(화장대+벽+도어)	2,140	214	1,926	유상		
		미설치	⑬ 드레스룸(시스템선반+벽+도어)	2,850	285	2,565	유상		
	거실조명	미설치	⑭ 파우더룸+드레스룸(화장대+시스템선반+벽+도어)	4,200	420	3,780	유상	옵션⑭ 선택 시 ⑫, ⑬ 선택 불가	
		우물천정	⑮ 간접조명설치	380	38	342	유상		
84AH	주방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⑯-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990	399	3,591	유상	
				⑯-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5,730	573	5,157	유상	
				⑯-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00	700	6,300	유상	
				⑯-4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660	866	7,794	유상	
		현관	미설치	①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70	147	1,323	유상	
		알파룸	② 주방팬트리	1,150	115	1,035	유상		
		미설치	③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1,460	146	1,314	유상	옵션② 선택시 선택 가능	
	침실 1·2·3	파우더룸 드레스룸	가스쿡탑(가스3구)	④-1 가스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가스 1구]	750	75	675	유상	
				④-2 전기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650	65	585	유상	
			미설치	⑤ 냉장고장	2,180	218	1,962	유상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MMA(상판)+타일(벽)	⑥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대형 사각싱크볼	2,780	278	2,502	유상	
			일반 상부장	⑦ 상부장 플랩장	430	43	387	유상	
			미설치	⑧ 침실1 불박이장	2,620	262	2,358	유상	
			미설치	⑨ 침실2 불박이장	1,600	160	1,440	유상	
	거실조명	미설치	⑩ 침실3 불박이장	1,920	192	1,728	유상		
		공용욕실	양변기+비데	⑪ 비데 일체형 양변기	190	19	171	유상	부부욕실 기본제공
		미설치	⑫ 파우더룸(화장대+벽+도어)	2,140	214	1,926	유상		
		미설치	⑬ 드레스룸(시스템선반+벽+도어)	2,830	283	2,547	유상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⑭ 파우더룸+드레스룸(화장대+시스템선반+벽+도어)	4,180	418	3,762	유상	옵션⑭ 선택 시 ⑫, ⑬ 선택 불가	
		우물천정	⑮ 간접조명설치	380	38	342	유상		
		냉매배관 (거실+침실1)	⑯-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3,990	399	3,591	유상	⑯-1, ⑯-2, ⑯-3, ⑯-4 중 택1 ※ 옵션 미선택시 기본에어컨냉매배관(거실+침실1)만 설치	
			⑯-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5,730	573	5,157	유상		
			⑯-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000	700	6,300	유상		
			⑯-4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660	866	7,794	유상		

84B	현관	미설치	①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70	147	1,323	유상	옵션① 선택시 현관 디딤판 위치조정
	복도	미설치	② 복도팬트리	1,350	135	1,215	유상	
		미설치	③ 복도팬트리 시스템선반	1,640	164	1,476	유상	옵션②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가스쿡탑(가스3구)	④-1 가스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가스 1구]	750	75	675	유상	④-1, ④-2 중 택1
			④-2 전기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650	65	585	유상	
		미설치	⑤ 냉장고장	1,970	197	1,773	유상	
		MMA(상판)+타일(벽)	⑥-1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 + 대형 사각싱크볼	2,760	276	2,484	유상	옵션⑥-1 및 ⑥-2선택시 주방가구 뒷선반 없음 * 옵션⑥-2의 경우 옵션⑦ 선택시 선택가능
			⑥-2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 아일랜드장 상판) + 대형 사각싱크볼	2,830	283	2,547	유상	
		미설치	⑦ 아일랜드장(상판MMA)	1,100	110	990	유상	
		일반 상부장	⑧ 상부장 플랩장	430	43	387	유상	
	침실 1·2·3	미설치	⑨ 침실1 불박이장	2,620	262	2,358	유상	
		미설치	⑩ 침실2 불박이장	1,600	160	1,440	유상	
		미설치	⑪ 침실3 불박이장	1,920	192	1,728	유상	
	공용욕실	양변기 + 비데	⑫ 비데 일체형 양변기	190	19	171	유상	부부욕실 기본제공
	파우더룸 드레스룸	미설치	⑬ 파우더룸(화장대+벽+도어)	2,370	237	2,133	유상	
		미설치	⑭ 드레스룸(시스템선반+벽+도어)	2,650	265	2,385	유상	
		미설치	⑮ 파우더룸+드레스룸(화장대+시스템선반+벽+도어)	4,410	441	3,969	유상	옵션⑯ 선택시 ⑬, ⑭ 선택 불가
	거실조명	우물천정	⑯ 간접조명설치	380	38	342	유상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⑰-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4,170	417	3,753	유상	⑰-1, ⑰-2, ⑰-3 중 택1 ※ 옵션 미선택시 기본에어컨냉매립배관(거실+침실1)만 설치
			⑰-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5,940	594	5,346	유상	
			⑰-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180	718	6,462	유상	
84BH	현관	미설치	①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1,470	147	1,323	유상	옵션① 선택시 현관 디딤판 위치조정
	복도	미설치	② 복도팬트리	1,350	135	1,215	유상	
		미설치	③ 복도팬트리 시스템선반	1,640	164	1,476	유상	옵션② 선택시 선택가능
	주방	가스쿡탑(가스3구)	④-1 가스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가스 1구]	750	75	675	유상	④-1, ④-2 중 택1
			④-2 전기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650	65	585	유상	
		미설치	⑤ 냉장고장	1,910	191	1,719	유상	
		MMA(상판)+타일(벽)	⑥-1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 + 대형 사각싱크볼	2,870	287	2,583	유상	옵션⑥-1 및 ⑥-2선택시 주방가구 뒷선반 없음 * 옵션⑥-2의 경우 옵션⑦ 선택시 선택가능
			⑥-2 엔지니어스톤 적용(주방상판 및 벽체, 아일랜드장 상판) + 대형 사각싱크볼	2,950	295	2,655	유상	
		미설치	⑦ 아일랜드장(상판MMA)	1,100	110	990	유상	
		일반 상부장	⑧ 상부장 플랩장	430	43	387	유상	
	침실 1·2·3	미설치	⑨ 침실1 불박이장	2,620	262	2,358	유상	
		미설치	⑩ 침실2 불박이장	1,600	160	1,440	유상	
		미설치	⑪ 침실3 불박이장	1,920	192	1,728	유상	
	공용욕실	양변기 + 비데	⑫ 비데 일체형 양변기	190	19	171	유상	부부욕실 기본제공
	파우더룸 드레스룸	미설치	⑬ 파우더룸(화장대+벽+도어)	2,370	237	2,133	유상	
		미설치	⑭ 드레스룸(시스템선반+벽+도어)	2,190	219	1,971	유상	
		미설치	⑮ 파우더룸+드레스룸(화장대+시스템선반+벽+도어)	3,940	394	3,546	유상	옵션⑯ 선택시 ⑬, ⑭ 선택 불가
	거실조명	우물천정	⑯ 간접조명설치	380	38	342	유상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⑰-1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	4,170	417	3,753	유상	⑰-1, ⑰-2, ⑰-3 중 택1 ※ 옵션 미선택시 기본에어컨냉매립배관(거실+침실1)만 설치
			⑰-2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	5,940	594	5,346	유상	
			⑰-3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침실2+침실3)	7,180	718	6,462	유상	

6.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층,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결례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전기배관 및 배선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옥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옥실팬, 옥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욕실선반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가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용 자동식소화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자동식소화기 제외),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현관창고 선반, 발코니 2단선반 등 가구일체(문짝포함)	-
⑨ 기타	자동식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하고 공용배기시스템 댐퍼와 연동되는 레인지후드(주방용 자동식소화기 설치 포함)를 시공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7.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 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인천영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0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수도권 순으로 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2.08.3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월(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동법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동차	35,570천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지방지침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다)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分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종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지자체(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서울·경기·인천(장애인), 인천시(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종소기업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08.16)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족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8.05 ~ 2022.08.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월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2003.08.05 ~ 2022.08.04 기간 중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인천·서울·경기)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을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5.08.05~2022.08.04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원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원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원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

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마.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967,147원	5,760,647	5,860,858	6,223,860	6,586,862	6,949,865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원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사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8.31)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의 경우 ‘II.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8. 16(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2022. 8. 17(수)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순위 	2022. 8. 18(목)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032-566-1806)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2.08.16(화)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로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

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22.08.31(수) 14: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2.09.13(화) ~ 09.19(월) 10:00~17: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전자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전자)2022.11.14(월) ~ 11.15(화) 10:00~16:00 (현장)2022.11.16(수) ~ 11.18(금) 10:00~16:00

※ 당첨자 서류접수는 9.17(토)~9.18(일)에도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주말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1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인천영종 A-33블록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yja33.co.kr)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약된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인천영종 A-33블록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2.09.13~2022.09.1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자축에 가입한 자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⑦ 재직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08.1.1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자축에 가입한 자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⑦ 재직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⑩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04)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⑪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률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radio"/>	③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input type="radi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input type="radi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input type="radio"/>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input type="radio"/>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input type="radi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input type="radio"/>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input type="radio"/>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input type="radio"/>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input type="radio"/>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input type="radio"/>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input type="radio"/>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③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08.1.1. 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input type="radio"/>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 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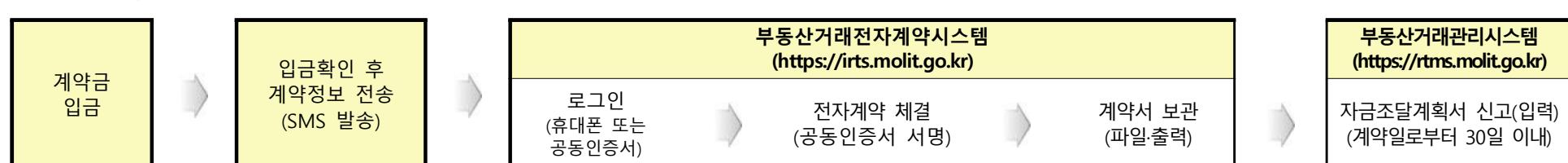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 계약금(1,000천원) +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LH 청약센터 게시 예정)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인감증명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 전자계약 진행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되며,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정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펌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단,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옥실 1개소	단자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거실	월패드 높이조정, 이간 센서등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체결기간 (2022.11.16~2022.11.18)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인천영종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 및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 표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항공장애등이 설치됩니다.
- 인천영종지구는 단계별 사업준공중으로 미준공 구간 등에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일부구간 사업진행지구로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토목/조경공사와 민간 건축공사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음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주체의 진행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인천영종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인접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쓰레기 집하시설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33블록 입주학생들이 통학 시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별도 육교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광로3-505-1 등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높이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크린넷 집하장, 수질복원센터 등 시설은 직접 현장방문하시어 위치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영종하늘도시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협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인접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등 건축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시회복지시설 및 묘지공원(봉안당)등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계획이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준공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준공 신청예정(또는 공사중)으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현장여건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33블록 주변도로는 서측으로 완충녹지 10m, 남측으로 완충녹지 15m, 동측으로 연결녹지 20m, 북측으로 연결녹지 20m 접해 있습니다.
- A-33블록 입주학생들이 통학 시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사완료되어 사업준공된 대로 및 종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도로에 대하여는 진출입구 개설에 따른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담장, 옹벽, 조경석 및 단지내부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구간은 현장여건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미준공 구간인 경우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인구유입 등으로 고려, 노선을 지정/관리함에 따라 입주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높이차이가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추후 토목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마감처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현장여건 등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영종하늘도시 내외 유해시설 및 협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이상입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영종지구는 단지내 자동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시 자동크린넷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크린넷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 시 소음, 냄새 등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미관저해,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크린넷으로 수거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이며, 자동크린넷으로 수거하지 않는 불연 및 재활용쓰레기 등은 기존의 수거 방식으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 자동크린넷의 각 위치별 쓰레기투입구 개수 및 용량, 위치 등 세부사항은 동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계획한 것으로 본 시공시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크린넷을 통해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투입구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고여 냄새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미관상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크린넷 투입구에는 캐노피 등 별도의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자동크린넷 투입구와 생활자원보관소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도 및 팜플릿, 분양 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써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문주의 경우 3301동쪽 정문 출입구에 1개소(단지내 1개소만 설치)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크기변경, 추가 설치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외 차도, 보도,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및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아파트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층간·세대간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벽체의 문양과 색상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우천 시 일부 동 금속재에 우수가 떨어져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훈룸이 설치되어 있고 훈룸 상부에 환기탑(DA)이 설치될 수 있어, 저층세대 시야차폐 및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등 보행자 통로주변에 설치로 인한 보행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 및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결송수관 주변 마감(석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므로 위치 이동 및 크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 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각 동별 지하 동 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임산부 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동별 상이할 수 있고,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 환기훈룸, 제연훈룸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펌프실 및 저수조실은 3301동 인근 지하에 계획 및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 및 크린넷 투입구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 및 크린넷 투입구는 일부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일부 동 인근에 설치되어 주변으로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청약 및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3301동은 쓰레기 배출을 위해 3302동 인근 자동크린넷 투입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동 동선상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를 가로질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3303동과 3304동 사이에 위치한 크린넷 투입구 이용 시 이동 동선 상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주동 진입 경사로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팜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설치되는 계절창고의 경우 동별 수량이 상이해 반드시 확인 후 계약 및 청약하여야 하며, 추가 수량 요청 불가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23대(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2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준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는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 출차주의 경광등으로 인해 인근동에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훌이 지하주차장(B1층)과의 연결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안전난간 또는 생울타리 담장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몰딩 하부층)는 블록별, 동별로 마감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블록별 동별 상이함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동표시, 아파트 문양, BI로고, 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심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유관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 난간은 분체도장 난간으로 시공 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획 및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성능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등 구조물로 인하여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최대2년)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수 있으며,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M~2.7M, 주차부위는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총575대 [지하 573대(장애인주차 18대 포함), 근린생활시설 2대]이고, 주차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의 단차로 인해 일부구간 조경석 쌓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경계부에는 설계여건상 옹벽 또는 조경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3301동, 3302동의 경우 지하주차장 입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혹은 측면에 제연헬름 급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는 3303동에 계획(2세대 사용가능)되어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몰딩하부층) 및 부대시설의 마감은 석재, 알루미늄시트 등으로 마감되며, 동별로 기단부의 높이 및 이음부위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외벽 일부구간에 금속판넬 장식이 설치될 예정이며, 우천 시 우수가 떨어져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동 전·후면 조경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단지 내 조경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303동 인근 지하1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SW 및 PAD TR이 단지내 녹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303동 측면에 발전기용 배기구가 위치하여 가동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탑(DA)이 설치될 수 있어, 저층세대 시야차폐 및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등 보행자 통로주변에 설치로인한 보행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안등 및 방범CCTV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종계기가 3302동, 3305동 지하헬름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설치위치 : 3303동 인근)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장 공기유입은 환기를 위한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냉방장치(에어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우편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3302동~3307동 6개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흥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균린생활·복지시설이 근접한 동은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적용대상 및 운영에 따라 작은도서관 및 다함께 돌봄센터는 의무설치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 및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천장 단열 노출) 별도의 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부위 및 트렌치에서 차량 통과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시공시 시공오차 등으로 인하여 팜플릿과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확인하신 치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품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며,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마감재(출입문, 손잡이 등)는 팜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한 하자 및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담공사로 인해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 제외품목 (소방관련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알파룸, 팬트리 등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벽면과 바닥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고 (대피공간에는 미설치) 수성페인트로 마감되며, 결로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만큼 발코니의 일부 면적이 감소됩니다.
- 실외기실은 외기 온도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로 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도장 페인트 오염 유의)
-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비생활 공간으로 결로저감재가 설치되지 않고 수성페인트 마감 처리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84B, 84BH형 발코니2에 설치된 손빨래 수전과 바닥 배수트랩 간 설치거리가 멀어 손빨래수전 사용 시 사용한 물이 발코니 바닥을 가로질러 배수됩니다.
- 84B, 84BH형 발코니2의 세탁기 설치위치와 바닥배수트랩 간 거리가 멀어 세탁기 배수호스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탁기 설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실 커튼박스 깊이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1층 및 지하층) 바닥의 경우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향후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발코니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창호의 규격이 작아 실외기 반입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짝 탈형이 불가능한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시공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를 낙하의 우려가 있고,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상부장은 높이가 높아 개폐 시 불편할 수 있으며,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장의 폭은 세대 타입별로 (평면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배관이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뼈질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는 가동 시 소음, 매연, 먼지 등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대피공간,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자는 견본주택에 시공된 기준과 달리 현장여건 및 시공과정, 자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호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배수관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배수관 등 주변은 발코니 천장 마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감압밸브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조닝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개폐가능형 ABS원형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시에는 개방하고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층 및 최하층 세대(피로티 및 부대시설 직상부 세대 등)를 제외한 전 세대는 아래층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 내 설치되며, 상부세대 하향식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물건 적재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도에 시공 및 표현된 줄눈(타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전원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인접해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거실 아트월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결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판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판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로 샤워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 질 수 있으며, 수압이 다소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언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팝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 게이트웨이내장)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 차단서비스(IoT콘센트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은 84A, 84AH, 84B, 84BH 타입은 현관창고 측면인 경량벽체의 복도쪽에 매립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 내에 설치됩니다.
 - 식탁등 조명기구는 노출 팬던트형으로 설치되며, 위치 이동은 불가합니다.(공간옵션선택에 따른 위치는 변경될수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조명기구, 스피커, 발코니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 또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자체조명이 리모컨스위치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빨래건조대 조명기구는 LED등으로 임의탈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에 피뢰침 또는 피뢰보호 설비가 설치됩니다.
- 3304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AI 서비스는 SK, KT, LGU+ 중 입주자가 선택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홈 IoT” 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스마트폰 앱은 통신사 무관)
- AI 스피커(입주자가 선택한 사업자의 기본사양 장비)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A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타사 AI 스피커 이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서비스 종료기간 후에는 스마트홈 사업자의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됨)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계약 시 SK, KT, LGU+ 이동통신 3사 중 스마트홈 사업자를 선택하고 입주 시 입주자가 선택한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스마트홈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무상사용 제공 기간 내라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LH 및 스마트홈 사업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가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 IoT 가전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의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TV/뮤직/인터넷전화 등 일부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 학교 개교 시기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입주시 사업지구 인근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 인천영종지구 내 계획된 학교(유치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설립 여부 및 개교 시기가 정해집니다.
 - 공동주택 인근 학교(유치원) 용지가 있다고 해서 신설 학교(유치원) 개교(개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교육부(교육지원청)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용지는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유치원) 설립 계획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육지원청에 문의·확인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영종초이며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9학교군(영종중, 중산중, 하늘중, 하늘1중(24년 3월 개교예정))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이므로 고입전형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 및 학군의 경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시공기준 적용 주택(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돋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을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증개등)는 우리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 1층 세대는 내진 구조보강에 의하여 벽체두께가 증가해 상부층 보다 공간별 안목치수가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
	2.2 가변성	★★★★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 등급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해당없음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3.5 에너지 성능	★★★★
	3.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3.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3.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3.16 빗물관리	해당없음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3.18 절수형 기기 사용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3.21 자연지반 녹지를	★
	3.22 생태면적률	★★
	3.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3.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 등급	4.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4.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4.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4.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4.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4.14 방범안전 콘텐츠	★★
5. 화재 · 소방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
	5.2 제연 설비	★
	5.3 내화 성능	★
	5.4 수평피난거리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5.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건축비	토목	택지공급가격	56,116,856
		기간이자	1,970,900
		필요적경비	60,560
		그밖의비용	2,855,935
		계	61,004,251
		토공사	323,427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134,653
		석축공사	55,138
	건축	우·오수공사	493,883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11,699
		도로포장공사	229,151
		교통 안전시설물공사	16,566
	공사비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5,909,409
		부대시설공사	176,151
		계	8,350,078
		공통가설공사	1,647,734
		가시설물공사	2,567,891
		지정 및 기초공사	3,787,253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17,359,006
		용접공사	-
	기계설비	조적공사	1,289,455
		미장공사	1,763,220
		단열공사	2,147,337
		방수·방습공사	1,599,484
		목공사	2,559,997
		가구공사	611,654
		금속공사	429,024
		지붕 및 흙통공사	159,003
		창호공사	4,274,435
		유리공사	948,535
	그밖의공종	타일공사	1,534,795
		돌공사	2,866,082
		도장공사	1,168,291
		도배공사	548,019
		수장공사	868,705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161,092
		계	49,291,013
		급수설비공사	1,066,982
		급탕설비공사	219,830
	그밖의공종	오배수설비공사	3,221,572
		위생기구설비공사	1,744,616
		난방설비공사	1,914,669
		가스설비공사	726,923
		자동제어설비공사	114,885
		특수설비공사	42,356
		공조설비공사	1,542,839
		계	10,594,672
		전기설비공사	5,470,324
		정보통신공사	2,797,021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	4,743,934
		승강기공사	1,331,993
		계	14,343,272

		그밖의공사비	일반관리비	3,221,586
			이윤	5,502,486
			계	8,724,072
			설계비	1,762,399
			감리비	704,959
			일반분양시설경비	783,160
		간접비	분담금및부담금	414,829
			보상비	-
			기타사업비성경비	3,780,787
			계	7,446,134
	그밖의비용		제14조제2항에따라기본형건축비에가산되는비용	12,696,247
		합계		172,449,740

* 분양가격 공시내역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나. 효산감정평가법인
61,959,963천원	61,461,625천원	62,458,300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 이자	흙막이 공사비 등	기타 비용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주거건설가산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 주차장 층고증가 추가비용	사업승인 부가조건 가산비
								흙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쓰레기 이송설비					
금액	5,396,290	2,176,118	3,153,306	66,866	14,018,230	1,795,187	889,766	2,641,189	302,668	643,383	634,715	1,801,811	32,749	281,961	4,994,800	

※ 가산비 산출내역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영종 A33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주)한양(110-81-14611) (주)해동건설(417-81-0301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전엔지니어링 (주)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대평엔지니어링 (₩13,649,700,000)

10.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공식 홈페이지 : www.lhyja33.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인천영종 A-33블록 주택홍보관 : 032-566-1806(10:00 ~ 17:00)



인천지역본부